

독일 도산법상 법정 잔여채무면책제도와 비면책채권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I. 법정 잔여채무면책제도

1. 독일도산법과 면책주의

1877년 제정된 구파산법 이래로 독일은 오랫동안 비면책주의를 취하여, 도산절차의 종료 후에도 채무자가 잔여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자의로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30년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외에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이는 근로의욕의 상실, 취득재산의 은닉,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과중한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개인적, 사회적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1973년 석유과동 등과

같이 악화된 경제현실과 범규범의 괴리로 촉발된 약 20여 년 간의 도산법 개정논의를 거쳐 1994년 기존의 파산법(Konkursrecht), 화의법(Vergleichsrecht) 및 포괄집행법(Gesamtvollstreckungsrecht)을 통합해, 새로이 도산법(Insolvenzordnung)을 제정함으로써 면책주의라는 규범 목적의 대전환을 이루고,¹⁾ 통일적인 도산절차구조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도산계획제도, 법정 잔여채무면책제도 그리고 소비자도산절차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²⁾

현행 독일도산법상 채무자는 도산계획(Insolvenzplan, 도산법 제217조 내지 제269조)과 소비자도산절차(Verbraucherinsolvenzverfahren, 도산법 제304조 내지 제314조)에 따라 당사자



1) 독일 도산법 제1조(도산절차의 목적)는 제1문에서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거나 도산계획(Insolvenzplan)에 특히 기업의 존속을 위한 다른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공동의 만족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도산절차 본래의 목적을 언급한 후, 제2문에서 “성실한 채무자(redlichen Schuldner)에게는 잔여채무 면책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면책주의의 도입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Vgl. Landfermann, in: Heidelberg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3. Aufl., 2003, §302 Rn.1 ff.

의 합의에 기초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³⁾ 나아가 면책주의의 규범목적에 따라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정 잔여채무면책제도(Restschuldbe-freiung, 도산법 제286조 내지 제303조)를 통해 제302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행 과제로 제시된바 채무자 면책시 보호되는 채권이 특히 문제되는 제도로써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법정 잔여채무면책제도와 이 경우에도 특별히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채무자의 잔여채무면책신청

독일도산법 제1조 제2문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잔여채무 면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도산절차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286조는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도산절차에서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제287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다”고 법정의 잔여채무면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면책이 결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심사와 절차진행이 요구된다.

잔여채무면책은 채무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도산절차개시 신청시에 이루어져야 하

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동법 제20조 제2항의 통지 이후 2주 내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도산법 제287조 제1항). 이때 신청서에는 자신의 근로관계에 기한 수입이나 그와 유사한 지속적 수입 중 압류 가능한 채권을 법원이 정한 수탁자에게 도산절차 개시 후 6년 동안 양도한다는 선언을 첨부해야 한다(제287조 제2항 제1문). 만약 채무자가 그 채권들을 이미 사전에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질권 설정해 주었다면, 첨부된 의사표시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제2문). 근로관계에 기한 수입이나 그와 유사한 지속적 수입에 관한 채무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담시킨다거나 혹은 그 밖에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는, 제2항 제1문의 채권양도선언을 좌절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경우에 무효이다(동조 제3항).

3. 절차개시 및 면책불허가사유

(1) 절차개시 여부의 결정

도산법원은 최종기일에 채무자의 잔여채무면책신청에 관하여 도산채권자와 도산관재인을 심문한 후, 채무자의 신청에 대한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도산법 제289조 제1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채무자 및 최종 기일에 잔여채무면책의 거절을 신청한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



3) 도산계획상 채무자의 채무는 형성부에서 정해진 대로 변경되며, 변제하기로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책된다. 또한 소비자도산절차에서도 승인된 채무정리계획대로 채무의 내용이 변경되며,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게 된다.

며, 도산절차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종결된다(동조 제2항).

(2) 잔여채무면책예고 전 면책불허가 사유

이때 법원은 도산재단이 절차비용마저 충당할 수 없는 도산재단부족(Masseu-nzulänglichkeit)으로 도산절차가 중지된 경우 잔여채무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도산재단부족신고 후에 제209조에 의해 도산재단이 배당되고, 절차정지가 제211조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도산법 제289조 제3항).

또한 최종기일에 도산채권자에 의해 잔여채무면책거절을 신청했던 경우에 한해, 도산법 제29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잔여채무면책을 불허가해야 한다. 이들 사유의 존재는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채무자가 형법 제283조 내지 제283c조에 따른 도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제2호, 채무자가 여신을 제공받거나, 공적 자금으로부터 급부를 제공받거나, 공공기금에 대한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도산절차개시신청 전 최근 3년 이내 또는 신청 후 고의·중과실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틀리거나 불완전하게 서면으로 기재한 때

제3호, 도산절차개시신청 전 최근 10년 이내 또는 그 신청 후 채무자에게 면책이 승낙되었거나, 제296조[의무위반] 또는 제297조[도산범죄]에 의하여 면책이 거절된 때

제4호,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신청 전 최근 1

년 내 또는 그 신청 후에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부적절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낭비하거나, 경제상황의 개선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개시를 지연시켜 도산채권자의 만족을 방해한 때

제5호, 채무자가 도산절차 중에 고의·중과실로 이 법에 정한 정보제공의무나 협력의무를 위반한 때

제6호, 채무자가 제3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목록, 채권 목록을 고의·중과실로 틀리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한 때

4. 잔여채무면책의 예고 및 성실의무이행기간

이상과 같은 잔여채무면책신청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도산법원은 채무자가 제29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제297조[도산범죄] 또는 제298조[수탁자의 최소보수의 미지급]의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래에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음을 예고하게 된다(도산법 제291조 제1항). 이와 동시에 법원은 채무자의 압류가능한 수입을 제287조 제2항의 채권양도선언에 따라 넘겨 받을 수탁자를 임명한다(동조 제2항).

그 기간은 채권양도선언의 진행기간, 즉 제287조 제2항 제1문에서 잔여채무면책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양도선언에 따라 도산절차 개시 후 6년의 기간으로서, 이를 성실의무이행기간(Wohlverhaltenperiode)이라고 한다. 면책예고의 결정에 대한 효력 발생과 더불어 도산절차는 종결

되고 채무자에게 6년 간의 성실의무이행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1) 성실의무이행기간 중의 채무자의 의무사항

성실의무이행기간 중 채무자는 적절한 근로행위,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절반의 수탁자에 대한 인도, 주소지 등의 통지 및 설명의무, 변제가 오직 수탁자에게만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도산법 제295조 제1항). 또한 자영업의 경우 적당한 고용직에 종사했으면 이행했을 정도의 이행을 해야 한다(동조 제2항). 채무자가 성실의무이행기간 동안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채권자의 만족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는 그가 채무자의 의무위반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면책불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도산법 제298조 제1항). 이때 채무자가 충분한 책임조각사유 없이 자신의 의무이행에 대한 설명이나 그 설명의 진실성에 대한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을 주어진 기간 내에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해서 법원이 정한 기일에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면책은 허가되지 아니한다(독일도산법 제296조 2항).

(2) 잔여채무면책예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최종기일과 도산절차의 종료 사이에, 또는 성실의무이행기간 동안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독일형법 제283조 내지 제283c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다(도산법 제297조). 또한 수탁자가 자신의 지난해의 활동에 대해 최소보수를 받지 못했고,

수탁자가 서면으로 최소 2주간의 기간을 정해 그 지급을 구하면서 면책불허가의 가능성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면책의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도산법 제298조 제1항).

5. 잔여채무면책의 허가와 그 효과

6년간의 성실의무이행기간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도산법원은 도산채권자, 수탁자 그리고 채무자를 다시 심문하고, 종국적으로 잔여채무면책의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도산법 제300조 제1항). 잔여채무면책이 선고되면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며, 또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효과가 미친다(도산법 제301조 제1항). 이러한 면책의 허가는 채권자가 가지는 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나 담보권에는 영향이 없지만,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담보목적으로 가동기 또는 별제권에 기해 갖는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되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구상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도산채권자는 면책으로 말미암아 변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일단 변제를 수령하였다면, 그 받은 것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동조 제3항).

이때에도 예외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벌금 및 이에 상응한 벌과금들, 도산절차 비용으로 제공된 무이자 대차채무는 잔여채무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도산법 제302조). 이

에 대해서는 다음에 장을 달리해 자세히 살펴볼
도록 한다.

6. 잔여채무면책의 취소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 잔여채무면책이 허가된
후에도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고의로 위
반하고 이를 통하여 도산채권자의 만족을 현저
하게 해한 것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도산법원은
도산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와 수탁자를
심문한 후 면책의 허가를 취소하며, 채권자와 채
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도산법 제303조 제1
항 및 제3항). 이러한 면책취소의 신청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면책에 관한 재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 1년 내에만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2
항). 면책결정이 취소되면 면책의 효과는 없어지
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
산법 제201조 제1항).

II. 비면책채권

1. 제302조

앞서 잔여채무면책의 효과에서 본 바대로 도
산법원에 의해 면책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의 잔여채무는 자연채무로서 면책되며, 새로운
경제적 재기의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제302
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잔여채무면책의 효력

이 미치지 않는, 즉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채무를 규정
하고 있다: “제302조[제외된 채권] 잔여채무면책
의 허가는 다음에는 미치지 않는다: 1. 고의 불
법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 채권자가 제174
조 제2항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당
해 채권을 신청했었던 경우에만; 2. 벌금 및 제
39조 제1항 제3호에서 동일하게 제시된 채무자
의 채무; 3. 채무자에게 도산절차 비용 납부를 위
해 제공되었던, 무이자 대출로 인한 채무.”

입법자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에 대해 이를 채무면책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의 화해적 기능(Ausgleichsfunktion
des Deliktrechts)을 고려할 때 합당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벌금 등에 대해 채무면책의 효력범
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규의 제재적 성격을 유
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채무자에게 도
산절차비용을 위해 지원해 준 공적 재단의 채무
는 이후에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다른 채무
자들에게 도산절차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재
원을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인정된다.⁴⁾

(1)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

1) 포섭범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는 채권
자가 제174조 제2항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제
시하면서 당해 채권을 신청했었던 경우, 잔여채



4) Vgl. Vallender, in: Uhlenbruck, Insolvenzordnung, 13. Aufl., 2009, §302 Rn.1.

무면책의 결정 이후에도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이자에 관한 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소송비용 또한 청구권의 관철을 위한 권리실현 비용으로서 포함된다. 문언의 명확한 의미에 따라 중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책임으로 인한 청구권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⁵⁾ 연방법원의 관례에 따르면⁶⁾, 도로교통에서 당사자 보호를 위한 규정에 반하는 고의의 위반, 그리고 이를 통해 야기된 인신의 침해는 고의의 신체침해로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손해배상채무는 제302조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고 잔여채무면책 절차에 따라 면책된다. 하지만 강도피해자가 강도범죄에 수반된 폭력으로 이후에 죽음에 이르게 된 사례에서와 같이 특별히 높게 고양된 불법성 있는 행위에서는 그 결과가 행위자의 고의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⁷⁾

2)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양도(Cessio legis)와 면책 여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채권이 보험사례 등에서와 같이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양도 이후부터는 제302조의 적용에서 배제되

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라든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계속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도산법의 입법목적인 면책주의보다 불법행위법의 화해적 기능을 앞세운 것으로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지불 시에 보험회사가 채무자보다 더 용이하게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을지라도, 채무자의 고의로 저질러진 재정적 의무가 최종적으로 사회 전체로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채권의 양수인은 도산절차신청에서 자신의 채권을 기재해야 하며,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채무라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⁸⁾

3) 채무자의 이의제기

채무자와 도산관재인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관력 있는 판결처럼 도산채권의 금액과 순위에 따라 확정된 채권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채권은 잔여채무면책에 의해서 제외되며,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처럼 목록의 기재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218조에 따라 그 확정 후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도산절차 동안은 제89조 1항에 의해, 그 이후의 성실의무이행기간 동안은 제294조 제1항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저지된다.⁹⁾



5)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2 ff.

6) BGH v 21. 6. 2007 - IX ZR 29/06, NZI 2007, 532.

7)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2c.; Becker, Insolvenzrecht, 2. Aufl., 2008, Rn.1589.

8)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9 f.

9)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19 ff.; Landfermann, in: HeidKomm, a.a.O., §302 Rn.4.

반면에 만약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구술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그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문서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법원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도산채권목록에의 기입에서 그 채권을 제외하지는 않지만, 그 기판력과 집행가능성은 제한하게 된다. 이때 만약 채무자의 이의가 채권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법적 원인에 제한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제184조 제1항의 상응하는 절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¹⁰⁾

(2) 벌금 기타 유사한 범칙금

벌금(Geldstrafe)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동일하게 제시된 채무자의 채무들, 즉, 범칙금(Geldbuße), 과태료(Ordnungsgeld), 강제금(Zwangsgeld) 그리고 범죄행위(Straftat) 또는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의 부가재채(Nebenfolge)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계속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73a조, 질서위반법 제21조에 따른 가액배상의 몰수 또는 경제형법 제8조의 초과수입의 징수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제30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형의 시효기간이 벌금형의 경우 형법 제79조에 의해 단지 5년일 뿐이기 때문이다.¹¹⁾

(3) 도산절차비용을 위해 지원된, 무이자 대출금

채무자에게 도산절차 비용 납부를 위해 제공되었던, 무이자 대차로 인한 채무들 또한 법원의 잔여채무면책결정 이후에도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로서 남아 있게 된다. 제3호의 이 규정은 2001년 개정법률에서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이후에 다른 채무자들에게 동일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재원을 유지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¹²⁾ 잔여채무면책에는 도산채권자의 채무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302조 제3호의 규정은 도산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제공된 대출에만 해당된다.¹³⁾

그 오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 채무는 무이자이고 순수하게 절차비용 지급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된 것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때 업무처리 및 중개수수료 등과 같이 민법상의 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는 동조 제3호의 무이자 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산절차비용의 납부를 위한 무이자 대출 제도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적이고 박애적인 기금에 대해 제302조 제3호의 특례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공신력 없는 이윤추구자가 각각의 명목으로 붙인 수수료를 허용하



10)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23 ff.

11)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25 ff.

12)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28 f.

13)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32 ff.

는 것은 규정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⁴⁾

제3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채권의 양도 이후에 다른 채무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다른 채무자들을 위해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¹⁵⁾

2. 기타 문제되는 채권

(1) 조세

우리나라와 달리 조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조세 또한 법원의 잔여채무면책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면책되고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탈세의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독일 민법상 제823조 제1항의 절대적 권리 및 법익에 해당되지도 않고, 제823조 제2항에서의 침해되는 보호법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면책에서 제외되지 못한다.¹⁶⁾

(2) 부양청구권

도산절차의 시작 이후 발생한 부양청구권은 도산채권이 아니므로, 잔여채무면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양청구권은, 도산채권으로서 잔여채무면책으로 인해 하나의 자연채무로 변한다. 부양의무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법적인 부양의무를 고의로 침해하였다면 형법 제170b조가 민법 제823조 제2항의 보호법에 해당되어, 도산법 제302조 제1호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의 예에 따라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¹⁷⁾

(3) 계약상 채권

계약적 의무의 고의에 의한 위반은 불법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 제823조 이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의불법행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고의불법행위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계약적 청구권은 자연채무로 변하지 아니한다. 물론 채권자는 채권신고에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의 예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¹⁸⁾

김 석 주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4)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30.; Landfermann, in: HeidKomm, a.a.O., §302 Rn.1 ff.

15)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31.

16)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12.; Becker, a.a.O., Rn.1590.

17)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7.

18) Vgl. Vallender, in: Uhlenbruck, a.a.O., §302 Rn.11.